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4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김남준 · 박민규 · 허종식
한준호 · 모경중 · 조계원
송영길 · 이학영 · 김정호
정준호 · 이광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는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물 제한표면(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 등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안전과 지역 여건 간의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그 외부 관계 전문가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3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u>한다</u> .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하며, 그 외부</u> <u>관계 전문가에는 「지방자치</u> <u>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u> <u>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u> <u>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